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5.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3월 19일, 윤준병의원 등 2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3월 2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025.8.2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
론, 소위원회부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026.4.14.) 상정, 축조심사

제3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026.4.2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4차 전체회의(2026.4.30.)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
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윤준병의원)

우리나라는 수도권·대도시 중심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촌향도 등 인구유출 현상이 심화되었고, 최근에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고착화 등으로 인한 자연 감소도 갈수록 증가하면서 현재 농어촌 지역은 인구소멸·지방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는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 문제가 대두되었고, 지난 2020년 빈집 정비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여건에 맞춰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적 지원도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농어촌 빈집은 주변 지역의 위생·안전 등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위해요소로 인식되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 빈집 철거를 위한 유인기제의 부족, 농촌 빈집 정비와 관련된 부처 및 법령의 다원화 등의 문제들로 인하여 종합적·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체계적인 농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정법을 마련함에 있어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호 (96)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91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개정안은 현행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어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4조의2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현행법 [별표] 제2호에 따른 사업에 관해서는 개별 법률에 따라 인·허가 등이 있는 경우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함.

개정안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에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제2209124호)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해당 제정안 제16조의 ‘농어촌 빈집의 수용 또는 사용’ 규정과 현행법 간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입법 조치로 보임.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의 심사 경과와 현행법 개정을 고려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재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은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으로 통합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25.12.1.)되어 있고, 해당 대안은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빈집정비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상 법률의 제명과 사업명을 반영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법률 제21167호 개정(2025. 12. 2. 시행)으로 현행법에 별표 제2호(97)이 신설되었는바, 개정안의 조문번호를 (98)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이종욱)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